

원화 펌뱅킹서비스 계약서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4. 8. 4.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(생략)	(좌동)	
제 1조(목적) ~ 제 5조(실시간수납이체 업무의 범위)	제 1조(목적) ~ 제 5조(실시간수납이체 업무의 범위)	
(생략)	(좌동)	
제 6조(신청서의 접수)	제 6조(신청서의 접수)	
(생략)	(좌동)	
②"이용기관"은 “납부자”의 계좌번호, <u>주민등록번호</u> (사업자등록번호),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반드시 자동계좌이체약관 동의가 포함된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서면(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포함)으로 징구하여야 한다.	②"이용기관"은 “납부자”의 계좌번호, <u>생년월일</u> (사업자등록번호),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반드시 자동계좌이체약관 동의가 포함된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서면(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포함)으로 징구하여야 한다.	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
(생략)	(좌동)	
⑦의 1. "은행" 또는 “이용기관”은 “납부자”의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접수처리 한 후 익일(은행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) “은행”의 영업시간까지 사전 약속된 출금계좌번호, 납부자번호, <u>주민등록번호</u> (사업자등록번호)등의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전송하기로 한다.	⑦의 1. "은행" 또는 “이용기관”은 “납부자”의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접수처리 한 후 익일(은행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) “은행”의 영업시간까지 사전 약속된 출금계좌번호, 납부자번호, <u>생년월일</u> (사업자등록번호)등의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전송하기로 한다.	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
(생략)	(생략)	
제 7조(자동계좌이체 의뢰) ~ 제 43조(특약사항)	제 7조(자동계좌이체 의뢰) ~ 제 43조(특약사항)	
(생략)	(좌동)	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이전에 영업점, 인터넷뱅킹 이용매체에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개월간 게시하고,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.